

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즉시
------	------	---------

1. 신청인

① 성명 (법인명)		② 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③ 주소		④ 전화번호	
		⑤ 전자우편주소	

2. 부과고지 내용

⑥ 부과세액		⑦ 과세대상	⑧ 납부기한
재산세	지역자원시설세		

3. 분할납부 신청내용

⑨ 납기내 납부할 세액		⑩ 분할납부할 세액		⑪ 분할납부기한
재산세	지역자원시설세	재산세	지역자원시설세	

「지방세법」 제118조,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해당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	-----------

신청안내

- 재산세는 납부할 재산세 세액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 포함)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.
- 지역자원시설세(소방분)은 재산세 분납대상이고, 지역자원시설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1. 신청인란

- ① 성명(법인명): 개인은 성명,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- ② 주민(법인)등록번호: 개인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③ 주소
 - 개인: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,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 - 법인: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. 다만,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④ 전화번호: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.
 - ※ 기재착오,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.
- ⑤ 전자우편주소: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(E-mail 주소)를 적습니다.

2. 부과고지 내용란

- ⑥ 부과세액: 부과세액 중 재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적습니다.
- ⑦ 과세대상: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.
- ⑧ 납부기한: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연도와 납부 마지막 월일을 적습니다.

3. 분할납부 신청내용란

- ⑨ 납기내 납부할 세액: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재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적습니다.
- ⑩ 분할납부 세액: ⑥ 부과세액에서 ⑨ 납기내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적습니다.
- ⑪ 분할납부 기한: 분할납부할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 마지막 월일을 적습니다.

문의사항은 시(군·구) 과(☎ -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